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5년 파리 기후협약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폐기물, 건물, 수송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해지고 해외 주요 도시의 탄소배출 감축률에 크게 밀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보다 높은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서울지역 전반을 포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다회용품 사업의 시장 성숙도가 미미하여 관련 스타트업과 지역자활센터 등이 다회용품 세척 사업에 참여하도록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회용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회용품 사용의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다회용품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 신설)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이나 무상제공이 가능한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